

#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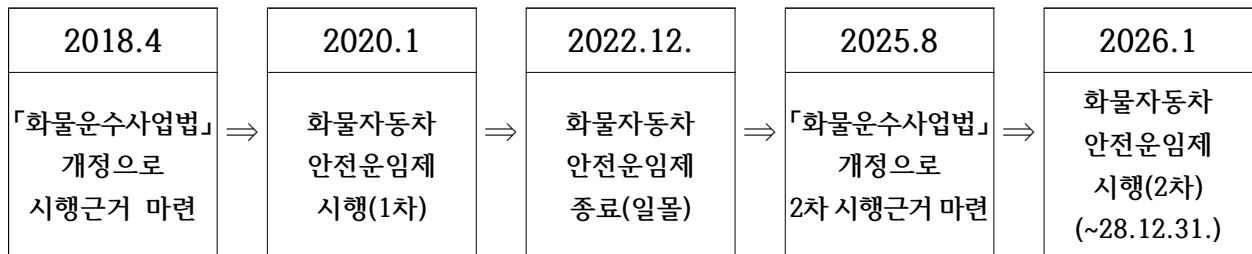
##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

### □ 개 요

#### ○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

- (정의)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
- (적용대상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
- (목적 및 효과) 근로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적정 운송료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로·과적·과속 운행 감소 유도 및 교통안전 확보
- (운임비 결정방법) 안전운임은 민간위원, 화주, 운수사, 차주 대표로 구성된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\*”에서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
  - \* 총 13인의 위원(공익위원 4인, 화주·운수사·차주 대표 각3인)으로 구성
  - 「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」 고시('26. 1. 30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55호)
- (유사개념) 표준운임제(~'25 / 일몰), 안전운송원가(철강·일반화물)
  - \* 안전운임제와 목적은 같으나 화물운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이 높고, 가이드라인 성격의 제도로 화주 처벌조항 등 법적강제력이 없음

#### < 안전운임제 시행연혁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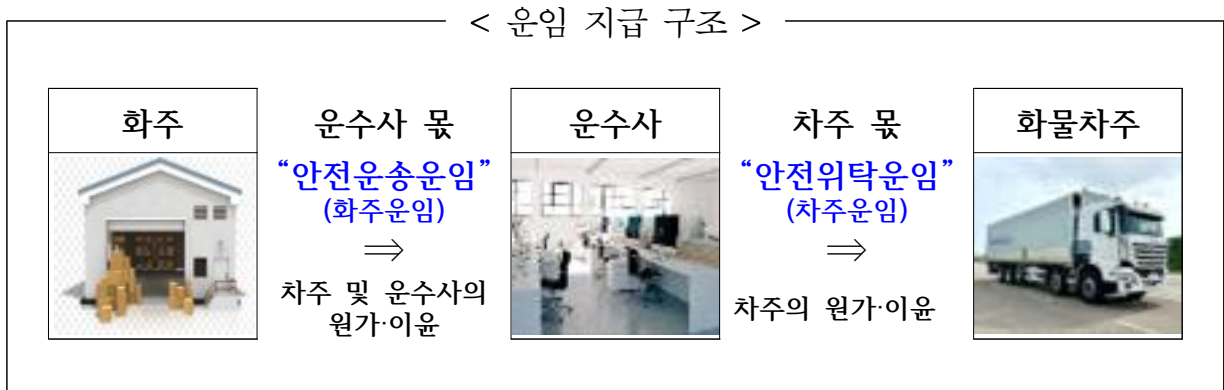
## 2 안전운임제 구성과 지급기준

### □ 안전운임의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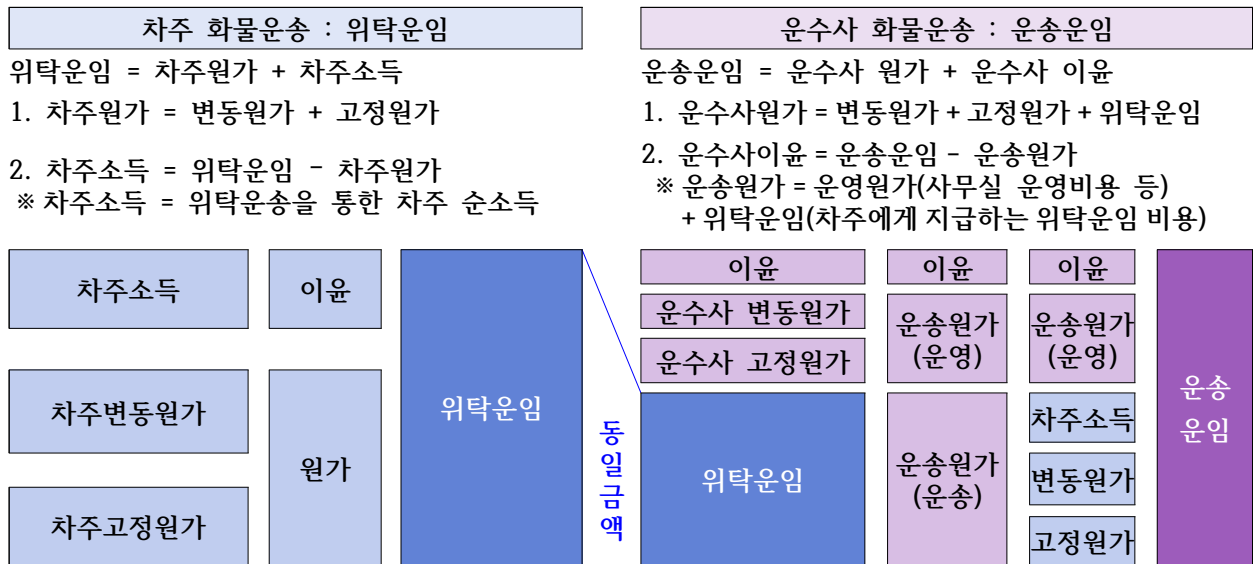
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(국토교통부 소속)
  - (근거) 「화물자동차법」 제5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설치)
  - (구성) 총 위원 13인(공익 4, 화주·운수사·차주 대표 각 3인)
  - (기능)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결정 및 조정 등(부대조항 포함)
- 결정절차 : 화물운송원가 조사(한국교통연구원 위탁) → 안전운임 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익년 안전운임·운임원가 공표(매년 10.31.까지 고시)

### □ 안전운임의 구성

- 안전운임의 구분
  - (안전운송운임)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
  - (안전위탁운임)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
  - (운수사업자 간 운임)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·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



## ○ 운임의 구성방식



## □ 안전운임 지급 적용기준

### ○ 운임적용 원칙

- (운임지급원칙) 당월 운송분 운임은 익월 말일 이내 현금 지급 원칙\*, 두개 품목 왕복운임 기본 적용이나 컨테이너 예외사항\*\* 있음

\* 부득이한 경우 당월 마감일 후 45일 이내 지급 가능

\*\* 수도권 화주공장에서 작업 및 공컨테이너 반납 또는 수령처가 의왕ICD인 경우

### - (거리측정방식)

가. 시멘트 : 실제 운송거리 기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

나. 컨테이너 : 기종점 구간거리\* + 터미널 내 운송거리

\* 대표 터미널 ~ 종점 위치 읍면동 주민센터의 거리

- (할증적용방식)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할증 운임의 경우 운임에 포함,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운임 할증 적용

\* 품목 간 할증률 가산이 다르므로, 부대조항 참고 필요

- (부가가치세) 고시된 운임표 운임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

- 이외 각 품목의 자세한 운임 적용원칙은 『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』 참조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-55호)

○ 적용대상품목

-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

| 구분          | 적용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위                     | 구간거리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출입<br>컨테이너 | 안전운송운임,<br>안전위탁운임,<br>운수사업자 간 운임 | 40FT(12m),<br>20FT(6m) | 편도 1km~<br>왕복 1,100km |
| 시멘트         | 안전운송운임,<br>안전위탁운임,               | 26톤(BCT),<br>1톤        | 편도 1km~<br>왕복 900km   |

< '26년 적용 안전운임표 >

- 시멘트

| 구간거리<br>(km) | 운송(왕복)<br>거리(km) | 안전위탁운임(원) |        | 안전운송운임(원)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6톤 기준    | 1톤 기준  | 26톤 기준    | 1톤 기준  |
| 1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| 85,600    | 3,300  | 93,200    | 3,600  |
| 2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| 85,600    | 3,300  | 93,200    | 3,600  |
| 3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| 85,600    | 3,300  | 93,200    | 3,600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...    |           |        |
| 448          | 896              | 951,500   | 36,600 | 1,036,500 | 39,900 |
| 449          | 898              | 952,800   | 36,700 | 1,038,000 | 40,000 |
| 450          | 900              | 954,100   | 36,700 | 1,039,400 | 40,000 |

- 컨테이너

| 구간<br>거리<br>(km) | 운송(왕복)<br>거리<br>(km) | 40FT 컨테이너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FT 컨테이너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위탁운임<br>(원) | 운수사업자 간<br>운임(원) | 안전운송운임<br>(원) | 안전위탁운임<br>(원) | 운수사업자 간<br>운임(원) | 안전운송운임<br>(원) |
| 1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125,300       | 135,500          | 146,500       | 108,500       | 117,600          | 127,400       |
| 2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128,300       | 138,500          | 149,500       | 111,000       | 120,100          | 129,900       |
| 3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| 131,700       | 142,000          | 153,200       | 113,600       | 122,800          | 132,800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...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548              | 1096                 | 1,274,700     | 1,347,500        | 1,423,200     | 1,110,100     | 1,174,000        | 1,240,500     |
| 549              | 1098                 | 1,276,600     | 1,349,400        | 1,425,100     | 1,111,600     | 1,175,500        | 1,242,000     |
| 550              | 1100                 | 1,278,300     | 1,351,100        | 1,426,800     | 1,113,100     | 1,177,000        | 1,243,500     |

### 3 안전운임제 위반에 따른 벌칙

#### □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

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- (제5조의12)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,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한다.
- 위와 같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무사항과 위반에 따른 벌칙을 아래의 표와 같이 관련 법령으로 지정하였음

| 위반유형            | 법적근거            | 벌칙규정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안전운송운임 미만 지급    | 화물자동차법 제70조제1항  | 건당 과태료 500만원           | 화주 부과            |
| 안전위탁운임 미만 지급    | 화물자동차법 제70조제1항  | 건당 과태료 500만원           | 운수사업자 부과         |
| 운임지급 관련 부정금품 수수 | 화물자동차법 제67조제1의3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 화주·운수사업자·화물차주 부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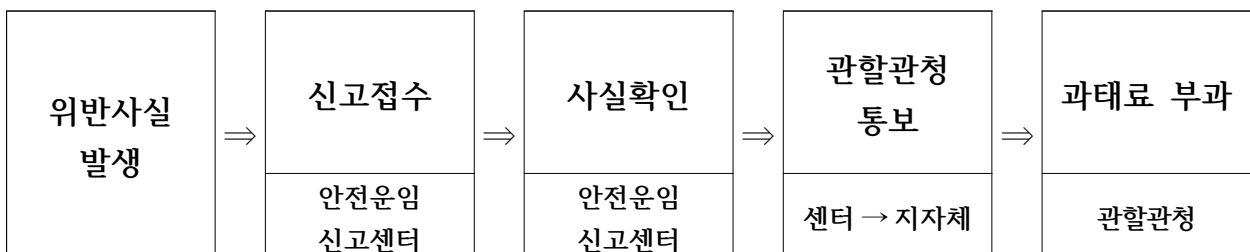
#### 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

- (개 요)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신고센터

\* 근거법령 : 「화물자동차법」 제5조의14

- (주요업무)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및 위반사실 확인 후 관할관청 통보
- (신고방법) 안전운임신고센터 인터넷 접수([www.safetruck.go.kr](http://www.safetruck.go.kr)) 및 전화 신고(1577-0990)

< 과태료 부과 흐름 >



##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, 물류 안전장치 마련

- 수출입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'26.1월 중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'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 - '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'26년 1월 7일(수)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\*(위원장 하헌구)에서 최종 의결되었다.
    - \* (총 13명) 공익 대표위원 4명, 화주·운수사업자·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
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·과적·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(화물차주)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.
  -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('20~'22년)로 최초 도입되었으며, '22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,
    -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·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('25.8.14,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)되었다.
  -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,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('26~'28년)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.

《 '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》

| 구 분    | 내 용  |
|--------|--|
| 운임종류   | - 안전운송운임 : 화주(수출입기업·제조업체 등)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<br>- 안전위탁운임 :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|
| 도입품목   |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반시 처분 |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  |

-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'25년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'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'26년 적용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(운임 수준) '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,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.8%,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.0%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,
  -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.8%,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.5% 수준으로 인상되었다.
  - ※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비교
  - (부대조항 보완) 험로·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,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였다.
-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,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.
  - 우선,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'안전운임신고센터' (<https://www.safetruck.go.kr>)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.

- 신고센터의 **전담인력**을 확충(전문 상담인력 1→ 3명 이상)하고, 신고 접수 이후에는 **지자체와 협업하여 과다·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**를 실시하는 등 **사후 관리**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- 또한, 안전운임제가 3년 **일몰제**로 운영됨에 따라 **제도의 지속성**에 대한 **불안정성**이 크고, 수출입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**사각지대**에 놓여 있다는 **지적**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,
  - 정부는 **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**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, **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**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“**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**에서도,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**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**은 **국민 안전을 확보**하고 물류 분야의 **안전장치를 마련**하는 데 **큰 의미가 있다**”고 밝히면서,
  - “**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**될 수 있도록 **적극 노력**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”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, 운송사업자,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.

13.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”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
가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: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,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(이하 “운수사업자”라 한다)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

나.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: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

**제5조의9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)**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
3.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.

1.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
2.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
3.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
4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
-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,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,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조의10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)**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·의결한다.
  1. 인건비,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
  2. 유류비, 부품비 등 변동비용
  3.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,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조의11(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)**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.
  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
 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
-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조의12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)**

-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.
-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·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의13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)**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5조의14(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)**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조의15(운송비용 등 조사)**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62조의2(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)**

-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,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·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7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의3.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

**제70조(과태료)**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의2.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2. 제5조제1항(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27.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#### 제64조(권한의 위탁 등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·연합회,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